

2014년도 퇴직자간담회 개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퇴직한 임·직원들을 초청하여 조합운영에 대한 의견교류 및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월 12일 “2014년도 퇴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계산 원터골에서 1996년 7월 1일 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합에서 퇴직한 선배들을 모시고 가벼운 산행과 조합의 어제와 오늘을 추억하고, 내일을 함께 계획해보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

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발전에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번 퇴직자간담회를 통해 퇴직자와 임직원간의 소통과 의견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자들은 퇴직자모임 창설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에는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회장 김용수 초대이사, 총무 고시봉부장 선임) 

조합원에게 최고 가치 제공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경남지점



부산지역 조합원사의 보증 및 공제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점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국제형 도시이다. 또한 울산, 창원, 진주를 포함한 경남지역은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우리조합은 이러한 부산과 경남에 449개 조합원(36,877좌수)의 부산지점과 252개 조합원(26,099좌수)의 울산영업소, 260개 조

합원(16,438좌수)의 창원영업소, 69개 조합원(5,912좌수)의 진주영업소로 구성된 부산·경남지점을 개설하고 조합원의 보증 및 공제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점에는 6명의 부산지점 직원과 영업소(울산, 창원, 진주) 직원 6명 등 총 12명의 직원이 1,030개의 조합원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점은 지난 2007년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제2설비건설회관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친 후 2008년 1월 30일 개관했다. 부산 설비건설회관에는 3층에 조합 부산지점이, 7층에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가 입주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합과 협회 업무의 유기적 관계는 물론 조합원사 및 협회 회원사의 원스톱 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직원들은 “김동탁 지점장을 중심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하자보수 청구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 대응하여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점·영업소의 노력 목표치를 자신있게 밝혔다. 또한 부산설비건설회관의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건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감과 임차인의 편의성을 더욱 증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합 미래의 출발점은 조합원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김동탁 부산·경남지점장은 “단순한 보증서 발급업무 등 한정된 일처리가 아닌 조합원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지원하는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직원들과 함께 해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지점 직원] 뒤쪽 왼쪽부터 김성경 부지점장, 곽민주 주임, 이영래 대리, 신금례 대리, 앞줄 왼쪽부터 남명훈 대리, 김동탁 지점장

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경남지점 및 해당 영업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및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락처 : 부산·경남지점(051-809-1147) 울산영업소(052-258-0376)
 창원영업소(055-238-6073) 진주영업소(055-748-4151)



전자입찰 실무교육

- 적격심사 정의와 심사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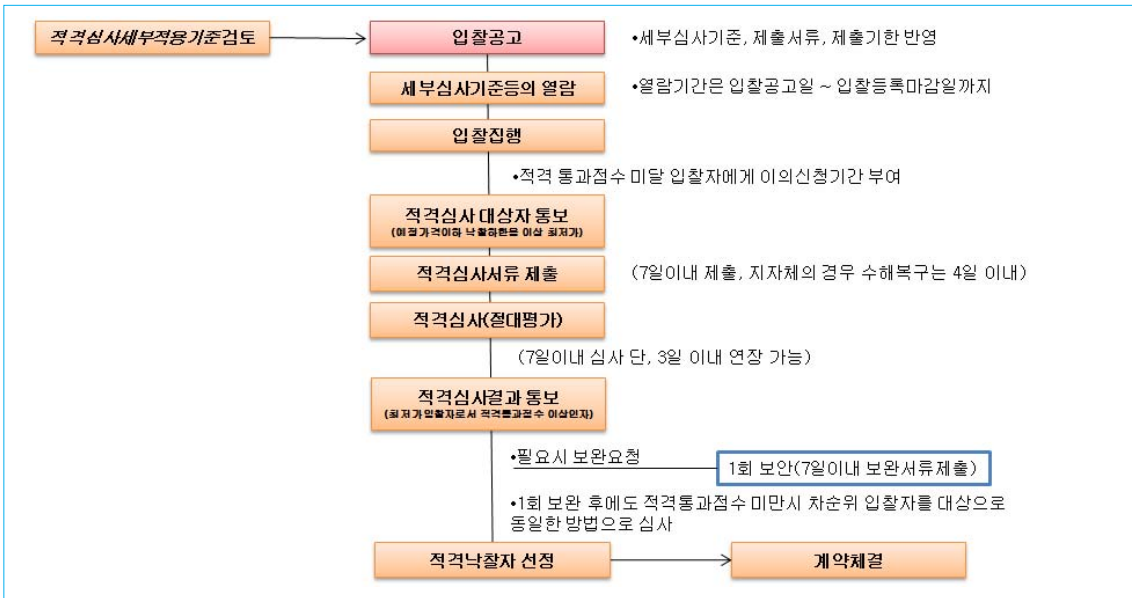
◎ 적격심사 정의

- ▶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 ▶ 1995년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하여 도입하였으며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입찰 제도이다.
- ▶ 1995년도에 이 제도의 도입 이유는 그 이전까지 시행되던 최저가 낙찰제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 ▶ 현재 300억 이상의 최저가 입찰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 및 여러 국가 사업의 경우 부실공사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적격심사의 기준금액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100억 이상 최저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음)
- ▶ 적용 예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계약일 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 1) 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하는 경우
 - 2) 희망수량 경쟁입찰 하는 경우

- 3) 유사물품 복수경쟁계약
- 4) 협상에 의하여 계약하는 경우
- 5) 적격심사 대상 공고 후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어 업체경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 적격심사 기초

적격심사 세부절차



[조달청 시공실적 적용 기준]

관련협회에서 통계 완료한 최종년도의 실적 인정기간을 발주처에서 발표한 날부터 적용(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방법	실적 사항	점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 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다, 평점상한은 15.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와 같음 -실적은 연중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당해공사업종의 실적 금액 인정기준(시공능력평가액이 아님, 관급자재대 포함하지 않음)

입찰공고일 2014년도 7월 2일 기준	입찰공고일 2015년도 7월 2일 기준
최근5년간=>2013년+2012년+2011년+2010년+2009년	최근 3년간 =>2014년+2013년+2012년+2011년+2010년

※업종마다 적용기준일이 다를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시공실적 적용 기준]

협회 실적신고 후 발주처에서 적용기준일을 발표한 이후 해당 년도부터 적용.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점 수	10.0	9.0	7.0	6.0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2) 실적인정범위 : <별표1> Ⅲ에 따라야 함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입찰공고일 2014.12.31 기준, 입찰동일업종 실적누계액

실적인정기간 가산방법

2013년+2012년+2011년+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12개월 이므로 실적인정기간은 4년 미만으로 평가
입찰공고일에 따라 기간은 달라짐

[평가시 소수점 처리]

- 지방자치단체/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이용시 공통 적용(각 발주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소수점 이하 자리 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계산한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인도 등의 가산점 적용]

가산점으로 인해 각 평가 항목별 상한점수를 초과 하였을 때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 평가 항목별로 만점이 아닌 경우에는 가점의 효과가 있으나, 이미 만점인 업체의 경우에는 가점 효과가 없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가 요령]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가?

실적이 없어도,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보유실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면, 투찰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 실적이 없어, 최소 점수밖에는 받지 못하므로, 낙찰 확률이 떨어지거나, 적격통과점수 도달이 불가능하여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규 설립 업체이거나, 신규면허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추정가격이 큰 입찰에 참가 시 적격심사의 시공경험평가점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찰 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소액의 입찰에 참가하여 실적을 쌓은 후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처별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규모

발주처	업종	추정가격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실적평가기준 금액	비고
조달청	일반공사	2억원 미만	평가 안함	예비기초금액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8천만원 미만	평가 안함		
	전문공사	1억원 미만	평가 안함		
국방부	상동				
지방자치단체	모든 업종	적격심사 대상 입찰 모두 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4년 기준으로 기간 적용)		추정가격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참가